

의안번호	2205002
의 피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4. 12. 3.
추계번호	24B46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에 산림관리기반시설(간선·산불진화임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4억 5,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2억 9,600만원(연평균 24억 5,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타당성 평가 전문기관 위탁 및 경비 지원	2,459	2,459	2,459	2,459	2,459	12,296	2,459

주: 1. 본 추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하는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추계 기간 동안 타당성 평가 대상 임도 길이 및 비용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타당성</u>에 대한 <u>평가</u>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u>필요한 경비</u>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	• 미대상 — 산림청의 경우, 산림청이 설치하는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위탁 및 경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

-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¹⁾

1) 법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설치 주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관리기반시설)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종류: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등

□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음²⁾

- 타당성 평가는 산림 유형별로 지방산림청(국유림), 시·도(공·사유림) 및 시·군·구(사유림)가 직접 수행중임
- 지방산림청의 경우, 대상지 현황분석 및 공간 분석, 현장조사 등 용역수행 중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2024년도 예산은 26억 5,500만원, 2025년도 예산안은 25억 7,100만원 규모

※ [참고자료 1] 산림관리기반시설 개요,

[참고자료 2]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사업 예결산:
2022~2025년(안) 참고

[표 2] 산림청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예결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임도시설(지원) (1536-302)								
- 임도 타당성평가	최적의 임도노선 선정을 위해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이 수행	895	890	2,220	2,324	2,655	1,835 (집행중)	2,571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2) 법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타당성평가 기준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관련)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전문기관에 타당성 평가 위탁 및 경비 지원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본 추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함

○ (타당성 평가 대상 임도)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하는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를 제외한 나머지 임도사업(지선임도, 작업임도 등)은 2020년 지방이양되어, 향후 설치 계획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평가 대상 임도 길이) 매년 지방임도 464km로 가정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확충 비용을 지원 중이며,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길이는 464km³⁾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타당성 평가 대상 임도 길이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타당성 평가 비용 단가) 1km당 530만원으로 가정

－ 산림청은 임도 개설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및 최적의 임도 노선 선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고도화를 위해 2025년도에 타당성 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해당 단가는 5.3백만원 수준⁴⁾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타당성 평가 비용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23~'25년(안) 간 타당성 평가 비용 단가는 5.3백만원으로 변동하지 않음

□ 추계 결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에 산림관리기반시설(간선·산불진화임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2억 9,600만원으로 추계됨

3) 세부사업 임도시설(자율)(1537-301), 임도시설(제주)(1537-301), 임도시설(세종)(1536-301)에 편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확충 길이

4) 2025년도 예산안 중 타당성 평가 예산은 2,571백만원 = 485km × 5.3백만원

[표 3]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경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임도 길이(A, km)	464	464	464	464	464	—	—
타당성평가 단가(B, 백만원/km)	5.3	5.3	5.3	5.3	5.3	—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2,459	2,459	2,459	2,459	2,459	12,296	2,459

주: 1. 본 추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충하는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추계 기간 동안 타당성 평가 대상 임도 길이 및 비용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2. 동 추가재정소요는 전액 지방비임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일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산림관리기반시설 개요

(산림청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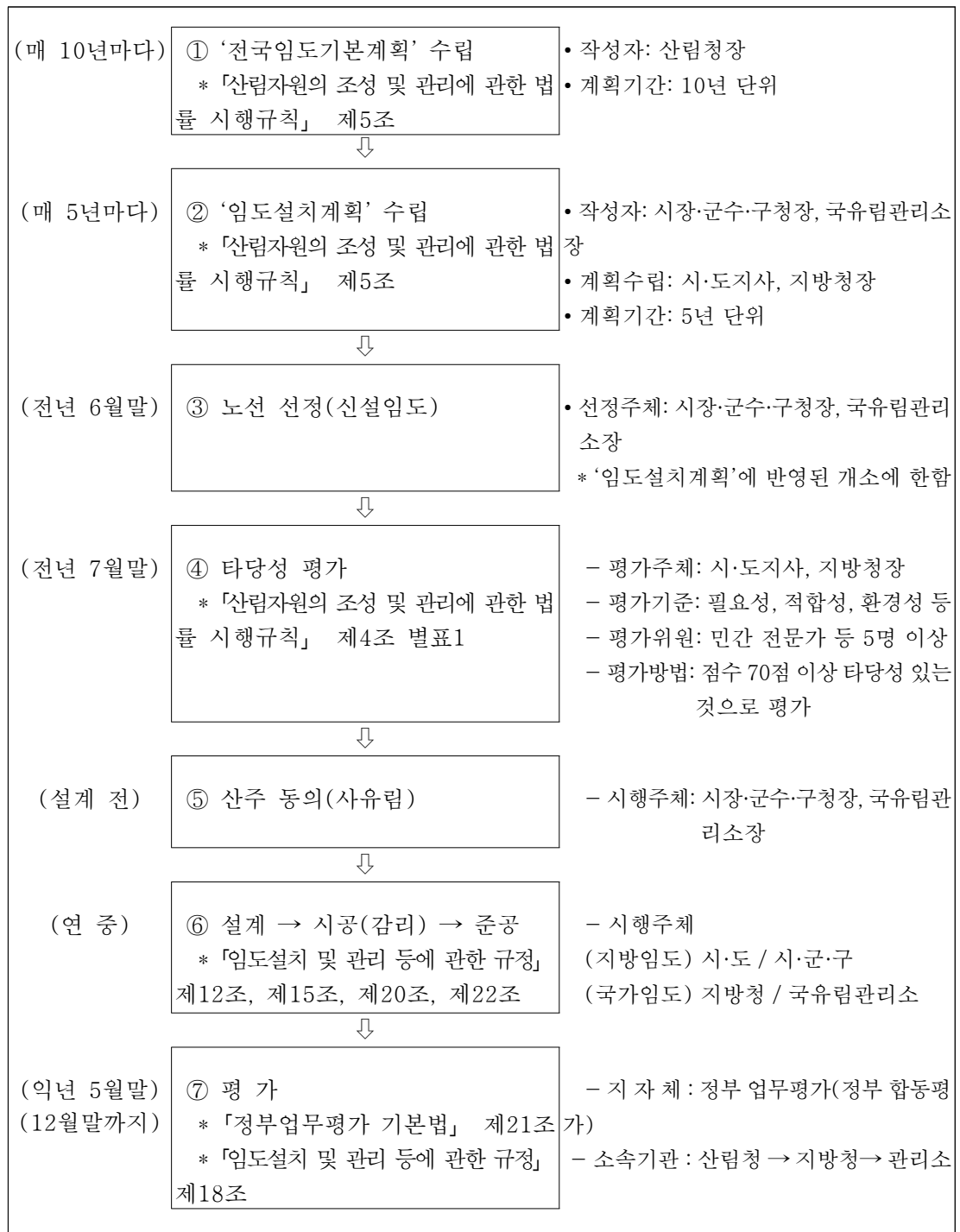
□ 산림관리기반시설 종류

구분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작업임도
시설 기준 (차이점)	- 유효너비 : 3.5 ~ 5m * 산불 발생 시 진화차량의 교행을 위한 노폭 - 주정차 및 산불대응장소, 차량 교행 장소 (간격 200~300m) 산불통합지휘본부 설치장소, 취수장 설치 등	- 유효너비 : 3.0m 이상 - 대피소 설치 (간격 300m 이내) * 취수장 없음	- 유효너비 : 2.5~3.0m - 목재생산·운반 등 기계화에 필요한 최소규격
대상지	-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대형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또는 민가 주변 등 주요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경제림육성단지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	인공 조림지 등 산림사업이 집중되고, 기계화작업이 시급한 지역
주요 기능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 - 진화장비 및 진화인력 투입 통로 - 평상 시 일반인 통행 제한적 허용	-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과 산림정비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임도 - 도로와 도로 및 마을 간 연결 -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 등 다목적으로도 이용	-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실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간선임도에서 연결
사업비	• 단비 : 334백만원/km	• 단비 : 278백만원/km	• 단비 : 156백만원/km

□ 산림관리기반시설 유형 및 관리 주체·방법 등

유형	국가임도	지방임도	민간임도
관리 주체	국가(산림청)	지자체 (공유림:시도 사유림:시군구)	지자체(시군구)/산주
관리 방법	국가(국유림관리소) 직접 관리	지자체(시도/시군구) 직접 관리	지자체(시군구:위임관리)/산주 직접 관리
관련 사업 등	구조개량사업, 임도 관리 위탁사업, 임도관리단, 노폭확장, 유지보수 사업, 장마철 이전 집중점검 등	구조개량사업, 임도 관리 위탁사업, 임도관리단, 유지보수 사업, 장마철 이전 집중점검 등	구조개량사업, 임도 관리 위탁사업, 임도관리단, 유지보수 사업, 장마철 이전 집중점검 등

□ 임도 설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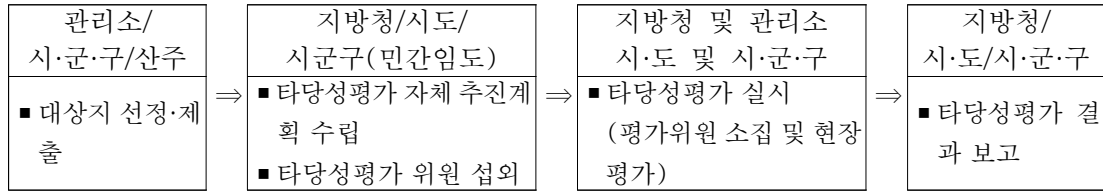


□ 타당성평가 기준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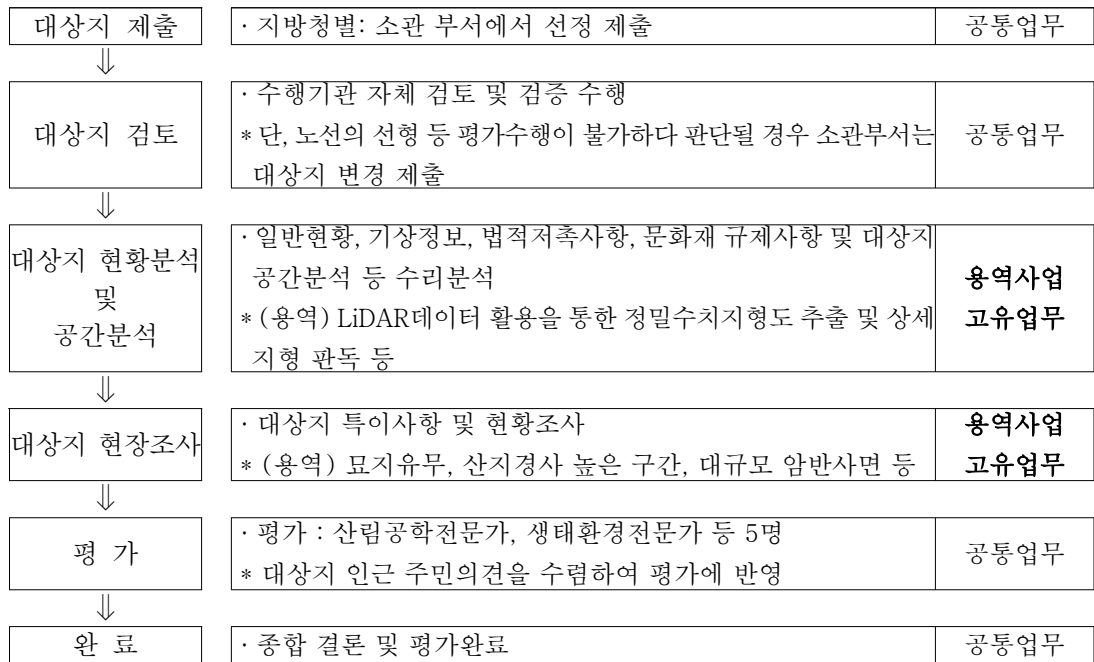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관련)

□ 타당성평가 절차

－ 지방산림청(국유림)/ 시·도(공·사유림)/ 시·군·구(사유림) 직접수행



－ 지방산림청 용역수행



[참고자료 2]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사업 예결산: 2022~2025년(안)

<관련 사업 예산 및 결산: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집행중)	예산안
임도시설(자율) (1537-301)	간선임도	산림순환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	70,359	72,690	73,315	73,315	78,616	59,143	70,909
	산불진화임도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	—	—	7,963	7,963	24,839	18,687	21,670
	소계		70,359	72,690	81,278	81,278	103,455	77,830	92,579
임도시설(지원) (1536-302)	간선임도	산림순환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임도	49,237	49,008	55,867	55,443	55,878	29,371	22,240
	산불진화임도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	66,800	66,074	75,150	74,010	100,200	52,692	135,270
	작업임도	산림사업을 위한 기계화작업이 가능한 최소규격의 임도	16,875	16,349	10,125	9,963	8,100	4,258	4,576
	노폭확장	기존임도의 노폭을 확장하는 사업(3→5m)	16,200	15,674	10,800	10,723	—	—	—
	구조개량	기존 노후임도에 대한 구조 안정화 개량사업으로 재해예방	4,080	4,151	4,080	4,015	6,630	3,485	13,606
	임도관리단	인력을 통한 잠재적 재해예방 및 사전 위험요소 제거	5,334	5,149	5,644	5,300	2,918	2,123	2,954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집행중)	예산안
	유지보수	임도사업·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	743	706	743	791	716	312	716
	임도 타당성평가	최적의 임도노선 선정을 위해 타 당성평가를 전문기관이 수행	895	890	2,220	2,324	2,655	1,835	2,571
	안전예방 및 구조 보강(위탁)	재난에 강한 임도 유지·관리를 위 해 전문기관에 위탁	—	—	—	—	3,290	745	3,290
	불일치 임도망도 정비	전국 임도망도 현행화 및 속성정 보 일체 정비	—	—	—	—	326	171	326
	임산물 운반로 구 조개선	임산물 반출을 위해 설치한 운반 로를 임도 시설기준에 맞게 임도 화	—	—	—	—	2,100	1,104	4,500
	소계		160,164	158,001	164,629	162,569	182,813	96,096	190,049
임도시설(제주) (1537-301)	간선임도	산림순환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 을 위한 임도	210	210	210	210	238	202	280
	산불진화임도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에 신 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	—	—	—	—	—	—	—
	소계		210	210	210	210	238	202	280
임도시설(세종) (1536-301)	간선임도	산림순환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 을 위한 임도	674	674	740	740	604	496	585
	산불진화임도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에 신 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	—	—	—	—	718	590	467
	소계		674	674	740	740	1,322	1,086	1,052
합계			231,407	231,575	246,857	244,797	287,828	175,214	283,96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